

의안번호	제606호
의결 연월일	2014년 1월 24일 (제326회)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4년 1월 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6
----------	-----

제출연월일 : 2014년 1월 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2013.12.12.)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임용 자격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제부지사 자격기준 중 근무상한연령 삭제 (안 제2조)
 - 부적격자 기준 중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무상한연령 초과자' 삭제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자”를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u>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자</u>는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p> <p>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4.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p>	<p>제2조(자격기준) ----- -----, ----- ----- <u>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u> -----.</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2013.12.12.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